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비원의 직무 수행 중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등 금지>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2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최근 유명 연예인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이 공항의 출입구를 막고, 시민들의 여권이나 탑승권 등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었음.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¹⁾. 이에 개정안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생략) <u><신설></u>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u>②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개정안은 경비원의 불법적인 업무 수행으로부터 시민의 자유·권리 및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변우석 공항 경호 논란," 조선일보, 2024년 7월 15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7/15/LIORSEVFAZD53CPUAHUDPZX SXQ/.

다만, 경비원의 직무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특성상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도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으로도 과잉경호와 같은 불법적 업무수행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경비원의 불법적인 업무 수행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